

예산총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5,555,691	14,866,671
일반회계	431,647,415	12,949,422
특별회계	63,908,276	1,917,248
공기업특별회계	33,715,660	1,011,47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120,541	393,61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595,119	617,854
기타특별회계	30,192,616	905,77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63,450	55,904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695,992	170,880
주차장특별회계	1,686,753	50,603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20,946,421	628,39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 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 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
- (2) 재무활동 경비
- (3)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